

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

2025. 11.
성평등가족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년 8월 12일, 강경숙의원 등 15인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8월 13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

○ 제418회국회(정기회)

-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(2024.11.18.)

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대체토론, 소위원회부

○ 제429회국회(정기회)

- 제1차 법안심사소위(2025.9.22.)

상정, 축조심사, 의결(원안가결)

-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(2025.9.24.)

상정, 소위심사보고, 찬반토론, 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 : 국회의원 강경숙)

다문화가족 자녀들은 외모·문화 등 차이로 인해 정체성 혼란을 겪

고 있으며, 학교와 사회 적응이 쉽지 않은 실정임. 이러한 실정을 고려하여 이들이 심리적 장벽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건실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함.

이에 시·도 교육감이 다문화가족 아동·청소년을 위한 심리·진로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겪는 심리적·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, 향후 진로에 대해 명확한 방향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자 함.

또한, 다문화가족 아동·청소년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사회적 편견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고,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려는 것임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: 이옥순)

1) 다문화 아동·청소년에 대한 심리·진로 상담 프로그램 지원 등의 근거 마련

개정안은 시·도 교육감이 다문화 아동·청소년에 대한 심리·진로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문화교류프로그램 등에 다문화 아동·청소년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,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제2항, 제10조제4항 신설).

하고 있음.

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심리·진로 상담 프로그램 지원과 관련하여 현행법 제12조제4항제1호1)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의 일환으로, 2022년부터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(7~18세)의 정서상담 및 진로설계를 지원하고 있음. 구체적으로 가정 내 문제, 학업, 교우관계 등을 상담하고, 초·중·고 학교급별 발달과정에 맞는 진로탐색과 외부 전문기관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음.

또한, 각 시·도 교육청은 다문화가족 자녀 진로설계 지원, 다문화가족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문화 학생 심리 정서 상담프로그램, 방학 진로캠프, 다문화 진로·진학 지원, 찾아가는 다문화학생 맞춤형 상담, 마음건강 프로젝트 등을 실시하고 있음.

한편,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내 소통 및 정서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가족센터를 통해 나눔봉사단을 운영하고 있

1)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

제12조(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.

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·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
2.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
3.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
4.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·단체와의 서비스 연계
5.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
6.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·번역 지원사업
7.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
8.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으며, 봉사자 소양 교육과 수요처 연계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음.

< 나눔봉사단 추진절차 >

추진 단계	추진 내용
대상자 모집 및 홍보	센터 회원 대상 홍보 및 자원봉사 전문기관 등 외부 기관 연계를 통한 자원봉사자 모집
봉사자 소양 교육	자원 봉사자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한 기초소양교육 실시
봉사 수요처 연계	시·군·구 및 다양한 기관 발굴을 통한 수요처 연계
사후 관리	봉사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 독려

최근 다문화 학생 현황을 살펴보면, 다문화 학생 수는 2024년 4월 기준 193,814명으로, 전체 학생 수(5,132,180명)의 약 3.8%를 차지하고 있으며,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.

< 다문화 학생 현황(2024년 4월 기준) >

(단위 : 명)

연도	다문화 학생 수				
	소계	초등학교	중학교	고등학교	각종학교
2024. 4	193,814	117,459	47,910	27,673	772
2023년	181,178	115,639	43,698	21,190	651
2022년	168,645	111,640	39,714	16,744	547
2021년	160,058	111,371	33,950	14,308	429
2020년	147,378	107,694	26,773	12,478	433

주 1) 다문화 학생 수 = 국제결혼가정 자녀 + 외국인 가정 자녀

2) 국제결혼가정 자녀: 한국인 부(모)와 외국인 모(부) 사이에 태어난 자녀로 국내출생과 중도입국으로 분류됨

－ 국내출생 자녀: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

－ 중도입국 자녀: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외국에서 태어나 부모와 함께 중도에 국내로 입국한 자녀

3) 외국인가정 자녀: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

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²⁾(2023~2027)에 따르면, 다문화 학

2)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3조의2(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)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 계획임.

생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, 다문화 학생의 학교적응도는 점차 낮아지는 추세(2015년 4.53점 → 2018년 4.33점 → 2021년 4.23점)이며, 우울감 경험은 증가하고, 자아존중감은 하락(우울감 경험: 2018년 18.8% → 2021년 19.1%, 자아존중감: 2018년 3.87점 → 2021년 3.63점)하였음.

또한, 학교폭력 경험비율은 2.3%로 전체 학생 1.1%에 비해 2배 높은 실정이고,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격차(2018년 18%p → 2021년 31%p, 2021년 고등교육기관 국민 전체 취학률 71.5% 대비 다문화가족 자녀 40.5%)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그런데 현행법에는 시·도교육감이 다문화 아동·청소년에 대한 심리·진로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할 근거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등에 다문화 아동·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원할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.

이에 개정안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, 다문화 아동·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 및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
개정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아동·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전국 가족센터 및 학교, 교육청 그리고 민관협력 사업을 통해 다문화 아동·청소년의 심리·진로상담 및 봉사활동, 문화교류 프로그램 등을 이미 운영하고 있고, 프로그램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임.

4. 대체토론 요지

없 음

5. 소위원회 심사내용

(법안심사소위원장 : 김한규)

강경숙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은 다문화 아동·청소년에 대한 심리·진로 상담 프로그램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·문화교류프로그램 등에 다문화 아동·청소년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,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으로, 원안의결함.

6. 찬반토론 요지

없 음

7. 심사결과

원안의결

8. 법제사법위원회 체계·자구심사 내용

체계·자구심사를 거쳤음.

※ 심사보고서 불임서류 :

1.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 제목 중 “교육”을 “교육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프로그램”을 “프로그램 및 심리·진로 상담 프로그램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·청소년이 지역사회와 긴밀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사회적 편견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, 그 참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아동·청소년 <u>보육·교육</u>)	제10조(아동·청소년 <u>보육·교육</u>
① (생 략)	<u>등</u>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	② -----
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·청소년이	-----
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	-----
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	-----
마련하여야 하고, 특별시·광역시·	-----
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	-----
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	-----
성원인 아동·청소년에 대하여	-----
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	-----프로그램
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.	및 심리·진로 상담 프로그램-
	-----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
	<u>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·청소년이</u>
	<u>지역사회와 긴밀한 유대</u>
	<u>감을 형성하고 사회적 편견을</u>
	<u>극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봉</u>
	<u>사활동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</u>
	<u>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</u>
	<u>보장하여야 하며, 그 참여에 필</u>
	<u>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

<u>④</u> (생 략)	<u>⑤</u> (현행 제4항과 같음)
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